#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55 발의연월일: 2021. 8. 6.

발 의 자: 송옥주·강민정·남인순

노웅래 • 맹성규 • 민병덕

박성준 · 소병훈 · 송재호

안호영 · 양정숙 · 유정주

윤준병 • 이성만 • 임종성

최종유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,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고용노동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는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두개의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·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,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한편,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 등 자격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

는 점에서 금지 ·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,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 삭제 및 제3조의4, 제20조, 제20조의3 등).

법률 제 호

##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의 제목 "(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)"를 "(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득과"를 "취득 및 징계와"로, "심의"를 "심의·의결"로, "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"을 "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를"로 하며, 같은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"를 "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의"로 한다.

5.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"를 "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"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제20조의3"을 "제20조의3제1항"으로 한다.

제20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공인노무 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 행하거나 자격증·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 다.

제22조제2호 중 "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"를 "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"로 한다.

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 나 자격증·등록증을 대여한 자
- 3의2.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·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행위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4(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	제3조의4(공인노무사자격심의・
<u>원회)</u> ① 공인노무사 자격 <u>취</u>	<u> 징계위원회)</u> ①취
<u>득과</u>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	<u> 두 및 징계와</u>
항을 <u>심의</u> 하기 위하여 고용노	<u>심의·의결</u>
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	<u>공</u> 인노무사자격심의 •
원회를 둘 수 있다.	<u>징계위원회를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
	<u>관한 사항</u>
②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	② <u>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</u>
<u>의</u>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	위원회의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20조(징계) ① 고용노동부장관	제20조(징계) ①
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<u>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</u> 의 징	<u>공인노무사자격심의·징계위</u>
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	원회
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제20조의3</u> 에 따른 자격대여	9. <u>제20조의3제1항</u>
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	
한 경우	
10. ~ 15. (생 략)	10. ~ 1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) | <삭 제>

- 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 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를 둔다.
- ②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) (생략)

<신 설>

- 제22조(청문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(청문) -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 - 1. (생 략)
  - 2. 제20조제1항에 따른 <u>공인노</u> 2. -----<u>공인노</u> 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

제20조의3(자격대여행위 등의 금 | 제20조의3(자격대여행위 등의 금 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>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의 자 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공 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 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(현행과 같음)
- 무사자격심의 징계위원회--제28조(벌칙) ① (생 략) 제28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<u>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</u> <u>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</u> <u>한 자와 그 상대방</u>

<신 설>

4. • 5. (생략)

2	 	 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 게 하거나 자격증·등록증을 대여한 자
  - 3의2.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 하거나 자격증·등록증을 대 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
- 4. 5. (현행과 같음)